제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9. 2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9월 23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부터 제17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부터 제17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33호『**신한카드㈜ 외 4개 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34호『**㈜직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35호『**㈜파운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36호『**㈜4차혁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37호『**세틀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금까지 한 110건 정도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상당히 많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허가하였는데 앞으로 혁신이나 리스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지?

○ (보고자)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비스 110건에 대해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위원) 제333호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 부분 관련임. 기존에는 은행 중심으로만 송금업무가 되다가 비은행 금융기관들로 점차 외국환업무가 확대되면서 스왑송금 업무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특히, 송금서비스는 많은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측면이 있고 고객의 접근성이라든가, 송금시장 내의 경쟁 활성화가 되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사가 진입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됨. 다만, 주요 부가조건을 보면 외환전산망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음. 예를 들어 해외에 뭘 보내려면 어떤 한 은행이나 송금은행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그 부분이 카드사가 직접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역할분담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38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변경안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9호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인 삼성증권㈜에 대한 업무추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신기술사업 금융업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11.20 시행)에서 위임한 채권소멸 절차 개시 기준금액 등을 정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1호**『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342호**『유안타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실명법을 위반(과징금 원천징수 후 납부의무 위반)한 미래에셋대우㈜ 및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금번 7월 6일 검사결과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 부분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소멸시효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사전통지를 수령하였지만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시 부분이나 산정 근거와 결과만 요약되어 있었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 충분한 내용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저희가 7월 21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7월 22일에 대상계좌 내역과 차명계좌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재통지 받은 후에야 과징금 등의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음. 사전에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나 조치 관련 예정 통보를 전혀 받은 바가 없었고, 검사 종료 후 검사서를 수령하고 조치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았어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고 바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예정통보를 받은 것은 당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는 차등과세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배치가 되고, 과징금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고 생각됨. 금융기관이 명의자와 추정자 간의 내부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기제출한 자료에 서울행정법원의 승소판결 정본과 9월 15일 20개 증권사 공동소송 승소판결 정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절차 문제와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먼저,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사전통지 할 사항은 없음. 다만, 금융위에서 진술인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봄. 그리고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출기간 내지 시효 문제인데 진술인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 제27조는 부과 후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고 저희는 동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술인이 부과와 징수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싶음. 그

렇기 때문에 기산점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우선 적용하면 2024년 1월 10일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시 5년간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 (위원) 진술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1심에서 승소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국세청에서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3호『**미래에셋대우㈜ 등 2개사의 검사결과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 통보안**』, 제344호『**미래에셋대우㈜의 검사결과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 통보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미래에셋대우㈜ 및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 및 ▲▲▲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5호『㈜**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하나은행 직원에 대하여 신분제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2019년에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의 민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PB직원 180명이 관리하는 1,936개의 계좌에 관련된 투자 관련 정보를 법무법인 율촌에 무단으로 송부한 사건임. 쟁점이 2가지인데, 하나는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금융실명법에서 인정하는 위탁으로써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임. 두 번째는 업무위탁이라 하더라도 위탁 목적에 비춰서 너무 과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하는 여부임. 금감원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업무위탁도 아니고 제공한 정보도 과다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았음. 이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고발도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정보제공이 업무위탁도 아니고 과다하다는 것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론임. 그래서 금감원의 제재심 절차에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배치되는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런데 본 건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론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업무위탁이냐의 여부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동일함. 현재는 금융

실명법이 가장 특별법이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순으로 정보보호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3법 모두 업무위탁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그래서 그 위탁이냐의 판단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탁은 한마디로 위탁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제공이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확립이 된 기준이고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기준임. 따라서 ㈜하나은행이 민원대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명확하게 업무위탁임.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업무처리방안'에는 명확하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상 '은행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제공', 즉 업무위탁으로 보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쓰여 있음. 금감원은 제재 절차에서 위탁이 아니거나 잘못된 위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였음. 첫 번째로, 금감원은 소송처럼 건별로 위탁해야지 수백, 수천 건씩 이렇게 일괄자문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본 건은 쟁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별 위탁이라고 생각하지만 건별 위탁이냐 일괄 위탁이냐 이런 것은 법률상 없는 기준이고 구별도 불가능함. 피해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소송도 허다함. 또 위탁을 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음. 그런데 위탁시 개인 이름을 지우거나 비식별처리를 하라는 요건은 없음. 법률의 취지는 '수탁자는 위탁자랑 동일한 정보로 볼 수 있다. 대신, 책임도 똑같이 강하게 져라'하는 취지임. 이것은 정보 관련 3법이 모두 공통으

로 요구하는 요건임. 마지막으로는 계약의 부실함을 지적하셨는데 금융실명법상 위탁 계약에 관한 요건 자체가 없음. 그래서 위탁 계약서를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1,000만원 짜리 과태료에 부과할 사안이지, 금융실명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래서 은행연합회 업무안내서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나 금감원의 안내서 등에서도 이 업무 위탁에 관한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 번 해석을 해 왔음.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위탁에 의한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20년 동안에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정보보호와 관련한 학계의 정설임. 지금도 이 원칙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금융실명법 적용기관인 금융회사의 내부직원처럼 정보를 살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저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인데 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결정이 기존 금융위나 금감원의 입장과 20년간 관습으로 굳어진 실무 그리고 학계의 의견들과 배치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만약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 위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함. 첫째,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고객이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 그다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에는 사실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도 있고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도 있음. 그런데 그중에서 오로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의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야 됨.

물론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가 중요하지만 민감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음. 더군다나 금융실명법상 정보는 기업정보도 보호하고 있는데 이 기업정보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결과를 초래함. 셋째로 비식별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려면 이름, 계좌번호를 지우는 수준이 아니라 은행 스스로가 이것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를 다 삭제해야 됨. 이런 수준의 삭제로는 변호사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음. 그래서 변호사법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두어서 변호사한테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을 충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임. 두 번째 쟁점은 정보제공이 과다하냐 하는 것임. 먼저 제공한 정도가 과다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관계 판단 문제이지 법령해석 문제가 아닌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했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함. 금감원에서 지적한 것은 2019년 8월 8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이 단 6건인데 PB 180명이 취급한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임. 그런데 변호사의 자문은 굳이 분쟁이 없어도 법률문제가 없음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 자체의 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 당시 사정을 보면 이미 2019년 7월 중순부터 미국 금리가 급락하자 언론 등을 통해서 DLF 고객의 큰 손

실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이미 고객문의가 쇄도하고 있었고, 2019년 8월부터는 당시 기준으로 모든 DLF 고객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었음. 그때부터 ㈜하나은행 PB들은 민원성 전화·방문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 은행사무실을 점거한다든지 PB를 감금한다든지 하는 일도 발생했음. 그래서 금감원 기준으로는 민원 6건이지만 실제로 이 고객 전원과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2019년 말까지 금감원 민원은 135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증가는 안 했지만 이유는 투자자 전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자율배상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임. 1인당 제공된 정보도 1,760개 항목 중에 37종 정도로 매우 적은 정보이고 정보가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다해 놓았음. 이 37종의 정보도 충분한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주된 쟁점은 아닌데 보조자로 징계대상이 되는 ㈜하나은행 ◐◐◐ 팀장의 경우에는 단순 정황사실만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림.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왜 위탁이냐는 부분과 과다한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람. 이 결론이 확정되는 경우 저를 비롯한 많은 금융 관련 변호사들의 업무가 위축될 것임. 과다 여부를 민원제기 건수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투자자가 아닌 정보를 줬다든지 투자자의 투자정보가 아니라 대출정보나 예금정보를 줬다든지 이렇게 완벽히 벗어난 수준의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라서 실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고려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제공된 정보의 일부라도 유출이 된 것은 없었고 ㈜하나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했고 기관 차원에서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68억 원의 제재를 받았음. 그리고 본 건으로 제재를 받는 ◐◐◐ 전무는 이미 DLF 판매 건으로 정직 3개월, ◐◐◐ 부장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음.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기다리는 이 건을 굳이 처벌해야 되겠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 (보고자) 당사자 측에서는 금융실명법상 업무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 위탁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함. 그런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고객의 계약을 위해 이행하는 것을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은행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논거였고,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대전제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1,900여 개 계좌에 대해 그 어떠한 비식별처리 없이 고객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일괄적으로 모두 제공했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 두 가지 의견이었음.

○ (위원)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한 것은 통상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진술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 (보고자) 그 쟁점 자체가 이것이 당해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는 판단으로 그 질의 배경이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정보제공이 필요최소한의 정보제공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됨.

○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 결정하면 선례가 되는 것인데 진술인이 말하듯이 이것이 결정되고 다음부터 금융기관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는지?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영향은 없을지?

○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변호사님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았음. 다만, 금융실명법 조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임. 이 건이 금융실명법의 조문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법률 자문 자체를 못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를 것이라고 봄.

○ (참여자) 약간 제약은 될 것 같음. 지금 이 취지가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이 고객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은행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것 자체를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위탁의 유효성이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제한을 한다면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듦. 이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딱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음.

○ (위원) 우리의 결정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업무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금융실명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따질 때는,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일 수 있지만, 너무 엄격히 해석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할 때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이 가능한지? 사례마다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이번 결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모든 것에 다 같이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나 결론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위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의 정보제공을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 그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듦. 금감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건별로 해야지 한꺼번에 통으로 몇 백 명의 정보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위탁과 다르다. 즉, 이렇게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일괄 위탁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한 것과 비식별화 하고 줘야지 이렇게 통째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애매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도 사실임. 그래서 변호사들의 업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에 관한 일

반적인 원칙 같은 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정말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 (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6건 민원에 대해 1,900여 건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고, 비식별화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제공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위원)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이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극단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기회에 입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그리고 이 사례를 가지고 비식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너무 극단적으로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금융실명법 원칙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든가 형태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임.

○ (보고자) 알겠음. 기본적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배경의 취지를 이 사안의 특수성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당연히 가능함.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이익과 오히려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즉,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특수성을 인정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또한,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뢰하면서 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범위에 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참고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비밀준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금융실명법은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음. 두 번째로 진술인이 얘기하신 것의 핵심은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임.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 형사고발 여부는 금감원에서 판단하고 있음. 현재 제재심에서 결정한 것은 ‘견책’, ‘감봉’ 정도의 수준인데 나아가서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여러 논점들이 제기되었고 검토가 됐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이 조항 구조 내에서는 2가지 요건이 한 조항에 담겨 있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등에 이렇게 위탁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위탁하는 행위 자체는 포섭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이 되

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호사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다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같은 조항이 위반됨. 법률이 그런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위원) 이것이 특수상황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례가 되면 전체적인 위축이 될 부분이 있어서, 만약 특수한 사례라면 특수한 사례로 설명하고 필요최소한이라든지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위했다든지, 비식별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례로 들어가면 상관없다고 생각함. 그런데 일반 사례가 되면 우리가 입법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임.

○ (위원) 추가적으로 진술인이 준법지원부 사내변호사의 보조책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검사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 (보고자) 내부변호사로서 준법지원부에 근무하는 사람임. 이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 전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이미 거기에 ◐◐◐ 변호사가 직접 참석을 해서 모든 내용을 알았음. 그리고 실제 자료를 보낼 때 ◐◐◐ 변호사한테도 메일을 함께 보냈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별도의 요청까지 했었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문하는 준법지원부 변호사로서 당연히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7호『**(경기)세람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관련으로, (경기)세람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8호『**(충북)한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관련으로, (충북)한성저축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9호『**(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주차장에서 모집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 (보고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음. 특히, 방카슈랑스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공히 별도의 지정된 창구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0호『**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한 예외 적용 승인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완화 조치를 '2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지난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시 내년 3월말로 6개월씩 연장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보고자)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6개월 동안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 1,700억 원 밖에 안 되었음. 업계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연장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1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35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존 규제정비위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심의(19.9월)의 후속 조치로 자산운용분야 5개 규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를 허용하고자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발공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자전거래를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지 않을지? 투자자가 다수일 때 누구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 것인지?

○ (보고자) 신탁거래 같은 경우에는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되는 두 개의 신탁 계약 각각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0호 **『(가칭)웰브릿지자산운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처리방안 보고』**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임펀드를 이관 받아 관리하기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가칭)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관련 처리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설립목적이 라임펀드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이해가 감. 그런데 법적으로만 볼 때 등록이후 수사결과가 나와서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되는 것인지?

○ (보고자) 대주주 적격요건은 등록이후 사업영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예외적용됨. 전문사모운용업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1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27분 폐회)